

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545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11. .
제출자 유영숙, 한종우 의원

1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나. 시장의 책무 및 이용대상(안 제3조~제4조)
다. 기능, 설치 및 운영(안 제5조~제6조)
라. 운영지원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,
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나. 예산조치 : 별도협의
다. 그 밖의 사항
1) 입법예고
가) 예고기간 : 2024. 11. . ~ 2024. 11. .
나) 예고결과 :
2) 부서협의
가) 협의기간 : 2024. 6. . ~ 2024. 8. .
나) 협의결과 :
3) 관련부서 : 노인장애인과

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노인복합문화센터”란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등 여가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취미생활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이용대상)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노인복합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노인 문화·여가 활동 지원
2. 노인 건강증진 지원
3. 노인 교육 지원
4. 치매 예방 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인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,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 소유 공공

시설의 일부를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.

② 노인복합문화센터에는 사무실, 프로그램실, 건강증진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 절차는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운영지원) 시장은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
2. 노인복합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비
3.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3. 12. 14.] [법률 제19449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노인정책과 - 총괄) 044-202-3456, 3455

보건복지부(요양보험운영과 - 재가노인복지시설) 044-202-3511, 3521

보건복지부(노인지원과 - 노인여가복지시설) 044-202-3478, 3479

보건복지부(요양보험운영과 - 노인의료복지시설) 044-202-3513, 3516

보건복지부(노인정책과 - 인권교육,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·학대 관련사항) 044-202-3452, 3453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 <개정 2007. 8. 3.>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4. 삭제 <2011. 6. 7.>

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13.>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6. 7., 2018. 3. 13.>

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9. 2. 8.,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8. 3. 13.>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[시행 2024. 1. 1.] [보건복지부령 제953호, 2023. 7. 17., 일부개정]

제24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)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8. 1. 28.>

1.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: 60세이상의 자
2. 경로당 : 65세이상의 자
3. 삭제 <2011. 12. 8.>

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1. 28.>

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(약칭: 여가활성화법)

[시행 2022. 7. 19.] [법률 제18759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문화체육관광부(문화정책과) 044-203-2518

제14조(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(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)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5. 18.>

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51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복지정책과) 044-202-3014

보건복지부(사회서비스자원과: 사회복지법인, 임원, 시설) 044-202-3258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 [제목개정 2011. 8. 4.]